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매매 관련 정보 게재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20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

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성매매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6호 및 제20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u><신설></u>	제4조(금지행위)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이하</u>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①·② (생략) ③ <u>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행위</u> 제2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u> 2. <u>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유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한 사람</u>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¹⁾, 성매매 또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성매매 관련 주요 처벌대상 행위>

구 분	내 용	법정형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21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19①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19②1)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행위 포함)를 한 사람(§20①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20① 2)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20① 3)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그러나 성매매의 형태는 오히려 다변화·지능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2019년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포털인 ‘밤의 전쟁²⁾’ 등과 같이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해당 업소에 대한 위치, 연락처,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희망자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³⁾.

○ 특히 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 성매매 후기를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운영⁴⁾하고 있는데, 이는 제3자에 의하여 특정 유형의 성매매가 이미 안전하고 안심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성구매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등 성매매 조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⁵⁾에서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행위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광고행위

2) 동 사이트는 전국 2,613개 성매매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종업원 프로필, 이용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로서, 2019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등의 검거가 이루어짐. 특히 동 사이트는 회원수가 약 70만명, 1일 접속인원이 10만명에 이르렀고 성매매를 하고 난 후기를 올린 글이 21만40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포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3) 채운태, 「성매매 포털-업소 제휴...광고제작·성매매수자 DB 업체도 기생」, 한겨레, 2024. 1. 25.

4) 회원들은 성매매 후기를 올려 포인트를 얻고 해당 포인트로 성매매 업소 이용권 등의 쿠폰을 구매할 수 있음.

5) 박찬걸,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 방안」, 2019년 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자료집 pp.6~7, 2019. 11. 8.

등으로 처벌⁶⁾할 수 있는 반면,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하여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미비한 상황⁷⁾임.

- 이에 개정안은 성매매 경험, 평가 등 성매매 후기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이하 “성매매 후기 게재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⁸⁾.

□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 후기 게재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할지 여부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매매 후기 게재 행위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성매매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데, 성매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확인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이러한 증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 후기 게재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로 성립되는 경우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별도로 처벌

6) 실제로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의 운영자도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됨.

7) 채윤희, 「‘여성 가성비 품평회’ 성매매 후기…범죄 자백인데 처벌 못 하나」, 한겨레, 2024. 1. 26.

8) 다만,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는 사례 등”은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유인 또는 광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관련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성매매 등에 대한 알선·유인·광고 등의 의사가 없는 단순한 평가나 의사 표현까지 형사처벌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과잉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과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개정안은 구성요건을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중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법문에 형사처벌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범죄를 구성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⁹⁾

- 다음으로 개정안은 해당 행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범죄행위와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법정형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은 "단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보다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더 높은 법정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¹⁰⁾, 이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성매매 후기 게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영업으로 성매매 관련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두 행위 간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현행법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70

9)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병역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기피 조장 정보에 대한 게시·유통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면서,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10)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